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안정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2.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선박 및 보트 건조업
6. 전기업
7. 전기통신업

8. 그 밖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함에 있어서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과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 및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로 본다.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안정을 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u> <u>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u> <u>1.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u> <u>2.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u> <u>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u> <u>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u> <u>5. 선박 및 보트 건조업</u> <u>6. 전기업</u> <u>7. 전기통신업</u> <u>8. 그 밖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u>

<신 설>

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함에 있어서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과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 및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신 설>

<신 설>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로 본다.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이하 “기간

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
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
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